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71호·제2206574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5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5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10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현행 「문화유산법」과 제정안의 비교	12
나. ‘보존’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5
다. 기본원칙(안 제3조)	16
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7
마.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안 제12조)	19
바.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	21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3조·27조) ...	22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5조)	2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	----

※ 참고자료

1.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현황	26
------------------------	----

I. 제안경위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제2206571호)]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6574호)]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2조).

바.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와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아.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된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금전 등의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 제정안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따로 묶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체계의 변화]

현 행		제 정 후	
문화 유산법	1. 유형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문화 유산법
	2. 기념물	2. 기념물	
	3. 민속문화유산	3. 민속문화유산	
	4. 국외소재문화유산	4. 국외문화유산	제정안

- 2011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로부터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반환되었고, 같은 해 12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던 우리나라 고도서 150종 1,205책(조선왕실의례 포함)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커졌음.

-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2012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고 해외 소재 문화유산의 환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동안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음.
- 한편, 「문화유산법」은 국가유산 중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인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임.
- 그러나 국외문화유산은 공간적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의 문화유산과 달리 보존·활용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제정안은 국외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존·활용과 전략적인 환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제21대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¹⁾.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1.7.5. 제출),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2021.9.13.), 임기만료 폐기

○ 다만, 아래 주와 조문별 검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른 입법례의 경우와 같이 심의기관 내지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의 심의, 자문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²⁾.

2) 「문화유산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동산)]

※ 29개국 801개처 116,961건 247,718점

(2025.1.1. 기준)

연번	소장국	소장처(개처)		수량(건)	수량(점)	비율 (점수기준)
1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394	36,817	108,705	43.8826%
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171	38,121	65,860	26.5867%
3	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27	10,680	15,477	6.2478%
4	중국	고궁박물관 등	76	4,658	14,226	5.7428%
5	영국	영국박물관 등	32	7,949	12,778	5.1583%
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11	3,935	6,215	2.5089%
7	러시아	국립동양미술관 등	7	2,029	5,384	2.1734%
8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9	2,848	4,322	1.7447%
9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등	9	617	3,073	1.2405%
10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8	2,249	2,478	1.0003%
11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등	6	1,292	1,973	0.7965%
12	오스트리아	빈민족학박물관 등	5	1,662	1,790	0.7226%
13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2	1,451	1,490	0.6015%
14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1	337	1,024	0.4134%
15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등	11	498	695	0.2806%
1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미술관 등	7	466	547	0.2208%
17	벨기에	예술역사박물관 등	4	344	402	0.1623%
18	헝가리	호프페렌츠아시아미술관 등	2	217	353	0.1425%
19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등	4	218	302	0.1219%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	바티칸	아니마문디민족학박물관	1	274	298	0.1203%
21	스페인	민족학세계문화박물관 등	2	89	96	0.0388%
22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등	2	77	81	0.0327%
23	이탈리아	문명박물관 등	3	58	70	0.0283%
24	뉴질랜드	켄터베리박물관 등	2	34	36	0.0145%
25	그리스	코르푸아시아미술관	1	30	32	0.0129%
26	체코	나프르스텍박물관	1	7	7	0.0028%
27	슬로베니아	첼레시립박물관	1	2	2	0.0008%
28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박물관	1	1	1	0.0004%
29	이스라엘	이스라엘국립박물관	1	1	1	0.0004%

※자료: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현황]

(2025.1.1. 기준) (단위: 점)

대상국	수량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상	구입	기증	수사공조	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719	6,119	2,978	80	3,061	0	600	0	328	272
미국	3,770	3,355	12	255	3,076	12	415	16	98	301
스페인	892	892	0	0	892	0	0	0	0	0
독일	727	701	18	1	682	0	26	21	5	0
프랑스	316	302	297	2	3	0	14	0	2	12
뉴질랜드	186	186	0	184	2	0	0	0	0	0
이탈리아	59	59	0	59	0	0	0	0	0	0
캐나다	20	20	0	0	20	0	0	0	0	0
호주	1	1	0	0	1	0	0	0	0	0
노르웨이	2	1	0	0	1	0	1	0	0	1
스위스	4	0	0	0	0	0	4	0	4	0
영국	16	6	0	2	4	0	10	0	10	0
합계	12,712	11,642	3,305	583	7,742	12	1,070	37	447	586

※자료: 국가유산청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7개 장, 27개 조문)과 부칙(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제2장(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및 제5장(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유산법」에서 국외문화유산에 관하여 규정된 제8장(6개 조문)³⁾과 국외문화유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제정안에 편입시키고,
- 국외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 및 환수·활용 차원에서 제정안 제3장(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과 제4장(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국외문화유산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국외문화유산의 교육 및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등의 조문을 두었으며,
- 총칙(제1장)과 보칙·벌칙(제6장·제7장)은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르고 있음.

3) 「문화재보호법」 2010. 2. 4. 개정 당시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의 구성체계]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2장 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4장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제5장 국외문화유산재단	제6·7장 보칙 및 벌칙
목적 (제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11조)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제15조)	국외문화유산재 단의 설립 (제21조)	공로자 예우 (제24조)
정의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제12조)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제16조)	금전 등의 기부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
기본원칙 (제3조)	국회 보고 (제8조)	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3조)	국외문화유산의 교육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9조)	국외문화유산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제18조)		과태료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에 대한 의견 청취 (제10조)		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제19조)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20조)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현행 「문화유산법」과 제정안의 비교

- 현행 「문화유산법」상 국외소재문화유산⁴⁾은 문화유산의 일부로 ① 문화유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정보화 촉진 및 교육 지원 등과 같이 문화유산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거나⁵⁾ ②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조사·연구 및 환수 활동의 지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등과 같이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⁶⁾에 포함되어 있음.
- 제정안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용어를 ‘국외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보존’, ‘활용’, ‘환수’, ‘출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며, 현행 「문화유산법」의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추출하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안에 편입한 부분이 있음.

4) 「문화유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도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유산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등

6) 「문화유산법」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

정의 (제2조)	- ‘보존’, ‘활용’, ‘환수’ 및 ‘출처’에 관한 정의 규정
기본원칙 (제3조)	-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 소재국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어야 함 -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어야 함
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제11조)	- 국가유산청장이 조사·연구 촉진을 위하여 우수한 연구자나 학술단체 등에게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소재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제15조)	- 국가가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수리 및 보존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외문화유산의 교육 (제17조)	- 국가유산청장이 국외문화유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21조)	- 국외문화유산재단이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운영 지원,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의 공로자에 대한 예우 및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 운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에 더하여 국외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 구입, 기증을 통한 환수, 국외에서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국외문화유산협력망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신규로 도입하는 부분이 있음.

[새로 도입하는 내용]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9조)	- 국가유산청장이 이 법에 따른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제12조)	-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국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 등이 사전에 국외 문화유산의 출처 확인을 하도록 함 -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등에게 예산 지원 현황이나 출처 확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외문화유산협력 망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 국가유산청장이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해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산청장이 협력망 구축을 위해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산청장이 협력망 구축·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제16조)	-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유산청장이 국외문화유산의 전시·홍보·교육을 위해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산청장이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을 위해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함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	-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과태료 (제27조)	-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4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함

나. ‘보존’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용어를 ‘국외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보존’, ‘활용’, ‘환수’, ‘출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도입·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 기간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존”이란 국외문화유산을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국외문화유산을 그 가치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환수”란 국외문화유산을 협상,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영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처”란 국외문화유산이 제작, 발견, 발굴 등으로 출현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재 및 소유권의 변동 이력을 말한다.

- 현행 「문화유산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용어만 정의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국외문화유산’ 및 관련 용어(보호·환수·활용·출처)들을 정의함으로써 국외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환수·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 기본원칙(안 제3조)

- 제정안 제3조는 국외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는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문화유산은 현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 등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불법·부당하게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은 환수되어야 한다.

- 이는 해외 소재의 국외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환수하기 위해 명확한 원칙을 정립하여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은 현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의 소장품이 특정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수 있고, 소장기관 등이 한국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노력을 담고 있으므로 제3조2항에 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5년마다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3. 국외문화유산의 조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국외문화유산의 국제협력,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외문화유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과 관련된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문화유산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각 유산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 또한, 다른 입법례의 경우와 같이 심의기관 내지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의 심의, 자문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문화유산법」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마.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안 제12조)

- 제정안 제12조는 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할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예산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 유물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지원 현황이나 출처 확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2조(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① 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 및 환수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는 출처 확인을 통해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부당하게 국외문화유산이 반출된 경우에는 환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12조는 국외문화유산의 출처 정보 확인을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소장기관이 국외문화유산을 비공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국외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국가유산청**은 제정안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예산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법률 이행의 수준을 관련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

- 제정안 제14조는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등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간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4조(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 4.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는 국외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해 국내외 문화유산 정책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 제14조제2항에서 국가유산청이 국외문화유산을 지원하는 기관의 협조를 구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 주관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3조·27조)

- 제정안은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아닌 자가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아닌 자는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국외문화유산재단과 관련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400만원) 규정을 마련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이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의 총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⁸⁾.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5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국외문화유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이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다양한 주체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참여하도록 하여 성과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8)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만, 권한의 위임·위탁 중 민간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구별하기 위하여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유사 입법례]

「항로표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암관리법」 제5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p.72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개정안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유산법」의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정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정법안이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현황

설립근거 및 임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설립근거를 둔 국가유산청 산하 법정법인(설립일: 2012. 7. 27.)
- 국외소재문화유산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 활용 및 전략정책 연구 등 수행

인원 및 예산

- 인 원: 정원 31명 / 현원 28명(휴직자 2명 포함)

구분	임원(상근)	1-3급	4급	5급	6급	계
정 원	1	5	8	11	6	31
현 원	1	5	7	6	9	28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A)	'25년 예산 (B)	증 감 (B-A)
국외소재 문화유산재 단 조사 및 환수·활용사업	기관운영	2,510	2,561	51
	국외문화유산 조사·환수·활용	3,111	3,111	-
	소 계	5,621	5,672	5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1,171	1,186	15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1,600	2,200	600
총 계		8,392	9,058	666